



得

# 특이되는 연금이야기

연금수급자를 위한 맞춤 안내서



연금수급자를 위한 맞춤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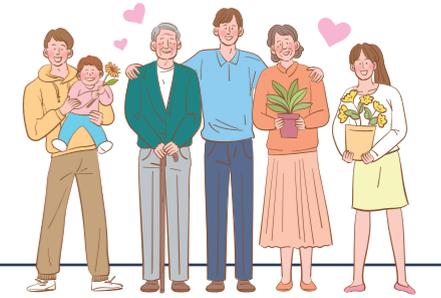
**특**이되는



**연금**이야기



공무원연금공단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머리글

---

## 퇴직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객님이 공직생활에서 흘린 땀과 경험은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어 내일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삶의 힘은 내면 깊은 곳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꽃길만 걸으라는 덕담을 자주 듣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누군가 잘 가꿔놓은 꽃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씨앗을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며 꽃길을 가꾸가는 과정의 희로애락이 없다면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할까 싶습니다.

새로 길을 낸다는 것은 더디고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세월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간이 그 일의 핵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고객님이 앞으로 만들어 가실 꽃길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고객님 삶의 굳건한 기반이 되어 믿음직한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 「득득이 되는 연금이야기」는 고객님과 공단이 함께 만들어갈 꽃길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곁에 두고 자주 보실 수 있도록 크기는 작게, 내용은 알차게 만들었으니 고객님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고객님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나. 우리는 원칙 준수 및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할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처럼 느끼고 생각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진심을 다해 응대**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행복한 제3연령기(Third Age)**를 위한 서비스를 고객과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서비스 슬로건

우리 공단 임직원은 공무원의 믿음직한 평생 동행 기관이 되겠습니다.

01. **공무원** -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모두를 의미합니다.
02. **믿음직한** - 공무원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03. **평생** - 공무원의 생애주기별로 평생동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04. **동행** - 공단과 공무원은 “하나”이며 “함께”라는 의미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단은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Contents

**특이되는 연금이야기**  
연금수급자를 위한 맞춤 안내서

### 01 공무원연금이야기

01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07
02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08
03 기금의 조성 and 운용	09
04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10

### 02 특이 되는 연금이야기

01 연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12
02 연금액 조정	14
03 수급권보호(양도·압류·담보 불가)	15
04 신상변동 신고	16
05 퇴직연금	18
06 연금정지	21
07 연금과세	27
08 유족연금	30
09 분할연금	37
10 해외이민 및 국적상실시 연금 수령방법	39
11 연금증서·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공무원연금증 발급 방법	40
12 연금복지멤버십	41
13 연금수급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49
14 월간 <공무원연금> 소개	50
15 공단 SNS채널 소개	51

### 03 연금생활지원 및 참여

01 공직윤리 의무	53
02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55
03 사회기여활동 지원	57
04 퇴직공무원 인력뱅크포털 G-시니어	61
05 후생복지시설	62
06 제후복지서비스	65

## 참고자료



# 01 공무원연금 이야기

공직자라는 자부심으로 씩 없이 앞만 보며 달려온 날들.  
이제 새로운 행복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설렘 가득한 그 길에 공무원연금이  
든든한 힘으로 동행하겠습니다.

-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 ②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
- ③ 기금의 조성 and 운용
- ④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http://www.geps.or.kr))

##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목적

# 공무원연금제도는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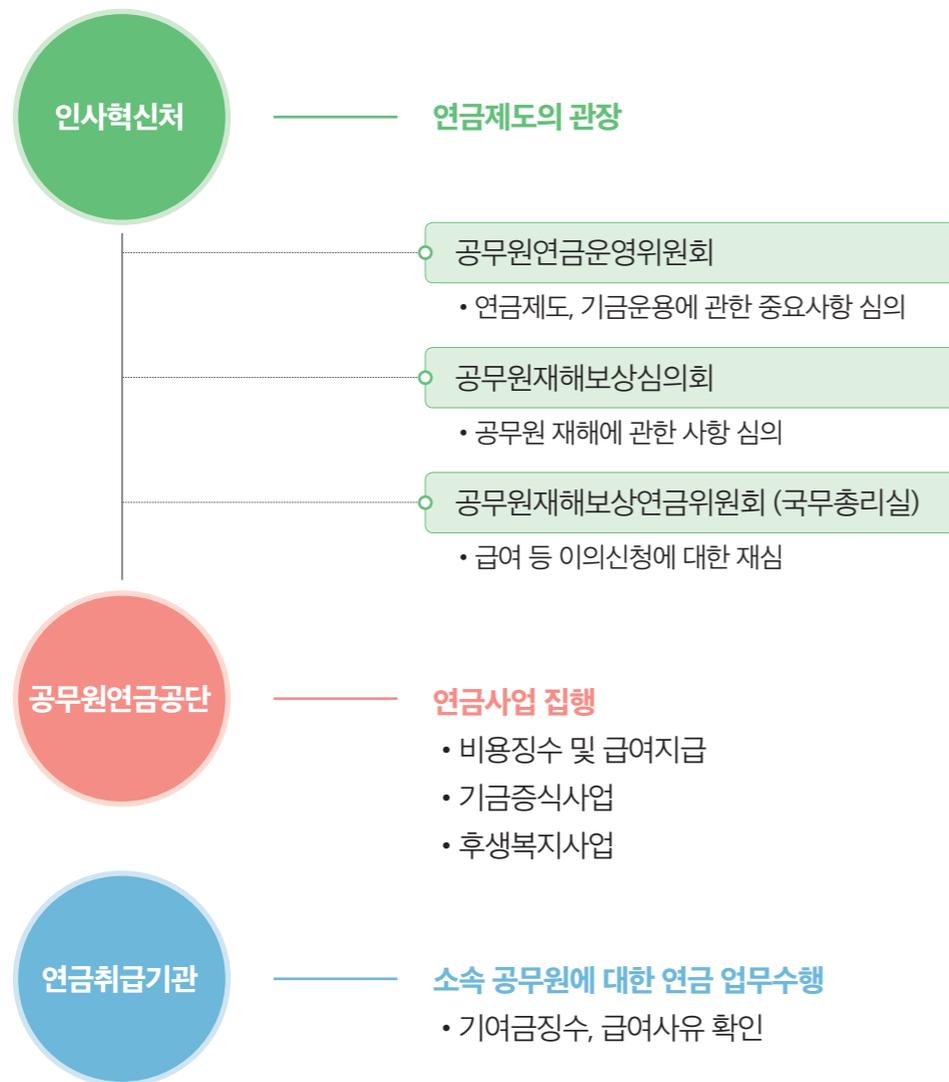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장애, 질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직 중의 사고나 퇴직 후의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소득보장제도와 민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 그리고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보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노후생활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써 그 운용주체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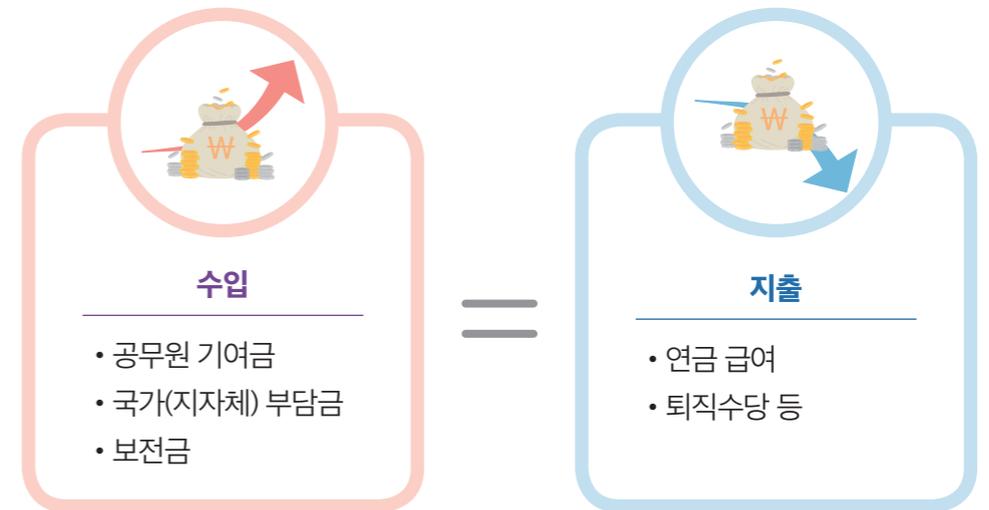


## 부족한 급여지급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합니다

공무원연금금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수입금으로 퇴직공무원의 연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연도의 수입금에서 그해의 급여비용을 총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의 연금 관련 정보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홈페이지(공단 홈페이지, 연금 복지포털, 맞춤형복지포털, G-시니어)를 통합함으로써 ONE ID-ONE PASS 즉, 하나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공단의 모든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맞춤형 서비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연금수급자 화면으로 이동하시면 연금정보조회에서 퇴직 후 사회참여 활동 정보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	연금정보 조회, 주소 및 연금 수령계좌 변경, 민원서류 발급 등
	공직의 경험을 활용한 봉사활동, 일자리, 교육정보 열람 및 지원
	천안상록리조트, 화성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 김해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예약 및 건강검진, 쇼핑몰 등 다양한 제휴서비스 이용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2

## 득得이 되는 연금이야기

제2의 행복한 삶을 열어 가는 길, 알아두면 도움이 될  
연금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는 걸음마다 한가득 기쁨을 담아  
다가올 앞날을 밝게 비춰드릴 불빛이 되겠습니다.

- ① 연금지급일과 수령 방법
- ⑨ 분할연금
- ② 연금액 조정
- ⑩ 해외이민 및 국적상실시 연금 수령방법
- ③ 수급권 보호 (양도·압류·담보 불가)
- ⑪ 연금증서·급여지급 사실 확인서·공무원 연금증 발급 방법
- ④ 신상변동 신고
- ⑫ 연금복지멤버십
- ⑤ 퇴직연금
- ⑬ 연금수급자 금융기관 알선대출
- ⑥ 연금정지
- ⑭ 월간<공무원연금> 소개
- ⑦ 연금과세
- ⑮ 공단 SNS채널 소개
- ⑧ 유족연금

## ① 연금 지급일과 수령 방법

# 연금은 매월 25일 고객님이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 연금수급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연금 지급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내역 확인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수급자 정보 → 연금수급사항 → 「지급내역」을 클릭하여 확인

### 연금 수령 계좌의 변경

연금 수령 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 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계좌변경 신청방법

 전화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 서비스 ▶ 연금 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변경
 우편 팩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수급자 인적사항/계좌 변경신고서」</li> <li>구비서류 : 신분증(사본)</li> </ul>

연금 지급과 연금수급계좌변경 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과 연금수령계좌변경방법 동영상]

###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을 이용하시면 연금월액 중 185만원까지 입금되어, 연금 압류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이 불가하며,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계좌로 입금됩니다.

-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 해외거주시 연금 수령 방법

해외에 거주하시는 연금수급자분들은 해외 계좌로 직접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송금 신청방법



-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신청서」
- 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해외계좌사본(통장식이 아닌 경우,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

연금압류 보호와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안내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압류 보호와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안내 동영상]

## ② 연금액 조정

# 연금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연금액은 매년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 연금액 조정방법

전년도 연금액 × (1+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물가변동률

### 연도별 연금인상률

2016~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0%	0.5%	2.5%	5.1%	3.6%	2.3%

※ 2016~2020년 한시적 연금동결



## ③ 수급권보호(양도·압류·담보 불가)

# 연금은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며 압류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기준은 국세의 경우 2024. 2.29. 이후, 지방세의 경우 2024. 3.26. 이후의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월연금액	압류 가능금액
250만원 이하	→ 0원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연금월액 - 250만원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연금월액 × 1/2
600만원 초과	→ 연금월액 - (300만원 + 600만원 초과액의 25%)

이와 같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 재산권과 다르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는 공단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연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한 공무원이 부채가 많아서 유족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유족급여는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고,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대법원 2009. 9.26.선고, 95다50340판결)

4 **신상변동 신고**

# 연금수급자가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연금수급자의 신상이 변동(사망·재혼·전화번호 변경 등)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이전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는 공단에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상변동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중단 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주요 신상변동 사항

신고 대상 신상변동	신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하였을 경우</li> <li>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한 경우(사실혼 포함)</li> <li>유족연금수급자가 공무원·사립학교·군인 퇴직(퇴역)연금을 수령하는 경우</li> <li>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li> </ul>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li> <li>연금수급자의 장애상태가 해소된 경우</li> </ul>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li> </ul>	가족 또는 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 되었을 경우</li> </ul>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li> </ul>	법정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할연금 수급자와 재결합</li> </ul>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상변동 신고 관련 서식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b>인터넷</b>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 서비스 ▶ 재직정보 ▶ 재직자 기본정보 ▶ 「주민번호 성명 정정신청」에서 변경
<b>모바일</b>	“공무원연금공단”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상단 우측 세부 메뉴 ▶ 「주민번호 성명 정정신청」에서 변경
<b>우편 팩스 방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수급자 인적사항/계좌 변경신고서</li> <li>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li> </ul>

### 주소·연락처·이메일 변경 방법

<b>전화</b>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변경 신청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b>인터넷</b>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 서비스 ▶ 연금수급자 정보 ▶ 연금수급사항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변경
<b>모바일</b>	“공무원연금공단”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상단 우측 세부 메뉴 ▶ 「주소 및 계좌변경 등」에서 변경
<b>우편 팩스 방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수급자 인적사항/계좌 변경신고서</li> <li>구비서류 : 신분증(사본)</li> </ul>

##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신고

‘공무원연금 부정수급’이란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그 유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를 받은자가 부정수급자로 판정되면 절차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신고방법

<b>전화</b>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b>인터넷</b>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연금부정수급 신고
<b>우편 팩스 방문</b>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공무원연금 부정수급 신고서」 출력 및 작성 후 공단 지부로 접수

신상정보 변경 방법은 동영상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변경 방법 안내 동영상]

# 행복한 노후의 시작! 그 출발선에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 연금수급이 가능한 연령

### 1. 1996년 이후 임용자

연금수급 연령이 퇴직연도에 따라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퇴직연도	연령	퇴직연도	연령
2016~2021년	60세	2027~2029년	63세
2022~2023년	61세	2030~2032년	64세
2024~2026년	62세	2033년~	65세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인하여 퇴직한 때 퇴직연도별 연금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16~2021년	퇴직시	2027~2029년	퇴직 후 3년
2022~2023년	퇴직 후 1년	2030~2032년	퇴직 후 4년
2024~2026년	퇴직 후 2년	2033년~	퇴직 후 5년

### 2. 1995년 이전 임용자

퇴직연도별로 정한 연령에 도달한 때 연금이 개시됩니다.

퇴직연도	연령	퇴직연도	연령
2015~2016년	57세	2019~2020년	59세
2017~2018년	58세	2021년~	60세

다만,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12.31.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 기간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됩니다.

※ 장해(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 1~7급)가 있는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장해 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개시연령 및 조기퇴직연금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연령 및 조기퇴직연금 동영상]

##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연금액 산정

1+2+3 기간의 산정액을 합하여 연금월액이 산정됩니다.

1기간 (2009.12.31. 이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이상인 경우: (평균보수월액×50/100)+(평균보수월액×20년 초과 재직연수×2/100)</li> <li>• 20년 미만인 경우: (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li> </ul>
2기간 (2010. 1. 1.~20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1.9%</li> </ul>
3기간 (2016. 1. 1. 이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재분배 비율 적용한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30년까지)×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li> <li>•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비율×재직기간×연도별 연금지급률 중 1% 초과분</li> </ul>

### 1) 평균보수월액이란

2007~2009년 3년간 보수월액(2007~2009년)을 매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09년 말 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을 급여사유 발생시 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 1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2010년 이후 매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사유 발생시까지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월수로 나눈 금액 → 2,3기간의 연금월액 산정

### 3) 소득재분배란

퇴직 전 3년간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비율 구간(부칙 제13387호, 2015. 6.22.)에 해당하는 적용비율을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한 금액 → 3기간(연도별 지급률1%, 재직기간 30년까지)의 연금월액 산정

기준소득월액의 개념 및 산정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개념 및 산정방법 동영상]

##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 수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 연수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5년, 25%까지 감액

## 연계퇴직연금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각각의 연금을 수급할 수 없을 경우, 공적연금연계 신청을 하면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이상(2016년 1월 1일 이전 퇴직은 20년 이상, 군인연금이 포함된 경우 20년 이상)을 충족 시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6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6년 = 12년

→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6년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6년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각각 지급합니다.

※ 2009년 2월 6일 이후 퇴직부터 적용, 연금 개시월은 공적연금연계법 적용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동영상]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6 연금정지

#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감액)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가 연금 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 전액정지

#### [임용 또는 선출에 따른 전액정지]

#### 대상자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또는 장애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을 받는 수급자가 재임용되어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단, 선출직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은 근로소득월액만큼 연금정지

#### 지방의회의원 정지액 산정 예시

- 근로소득월액 > 연금월액 → 전액정지
- 근로소득월액 < 연금월액 → 차액만큼 연금지급

#### 지급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재임용·재퇴직 신고

공무원연금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임용·재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지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간선택제(채용형,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도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 신고서식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재임용·재퇴직 신고서」

연금지급 정지제도 안내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정지제도 안내 동영상]

##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 재취업에 따른 전액정지]

### 대상자

다음의 기관에 임용되어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1.6배 미만인 경우 일부정지 대상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 ※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확인 방법

2025년 전액정지 대상기관은 이 책자 마지막 페이지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사업안내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참고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장이 상기 해당하는 기관을 매년 1월 25일 관보에 고시

### 지급 정지기간

재취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하는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전액정지 대상 월평균 근로소득금액

2025년을 기준으로 전년도(2024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52만원)의 1.6배인 8,832,000원(근로소득공제 후) 이상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액 정지됩니다.

### 2025년도 연금전액정지 조건표

(단위: 원)

총급여 [12개월 근무조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세법제20조②]	소득월액	월정지금액
121,170,000	15,173,400	105,996,600	8,832,500	전액정지

연금지급정지제도 팩트체크(주요문의사항 답변)는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제도 팩트체크 동영상]

### 일부정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 장애연금(비공무상장해연금 포함)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최대1/2)가 정지됩니다.

### 대상소득 종류



※ 부동산임대 소득기준은 과세대상 임대소득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연금, 배당, 이자, 기타, 퇴직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부정지 대상 금액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 따라 정지금액이 산정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인 2,740,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의 일부가 정지되며, 매년 1월 공단 홈페이지에 해당연도 적용 금액을 게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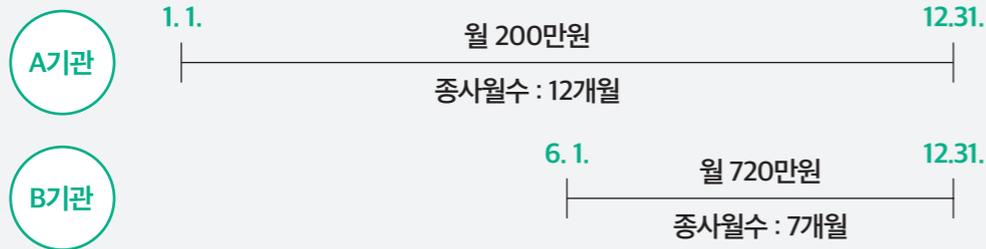
### 지급 정지금액 산정방법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눈 후 그 소득월액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을 차감한 '초과소득월액'별로 30~70% 정지하게 됩니다.

다만, 정지금액은 연금월액의 1/2 이상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연금일부정지액 산정 예시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월액: 2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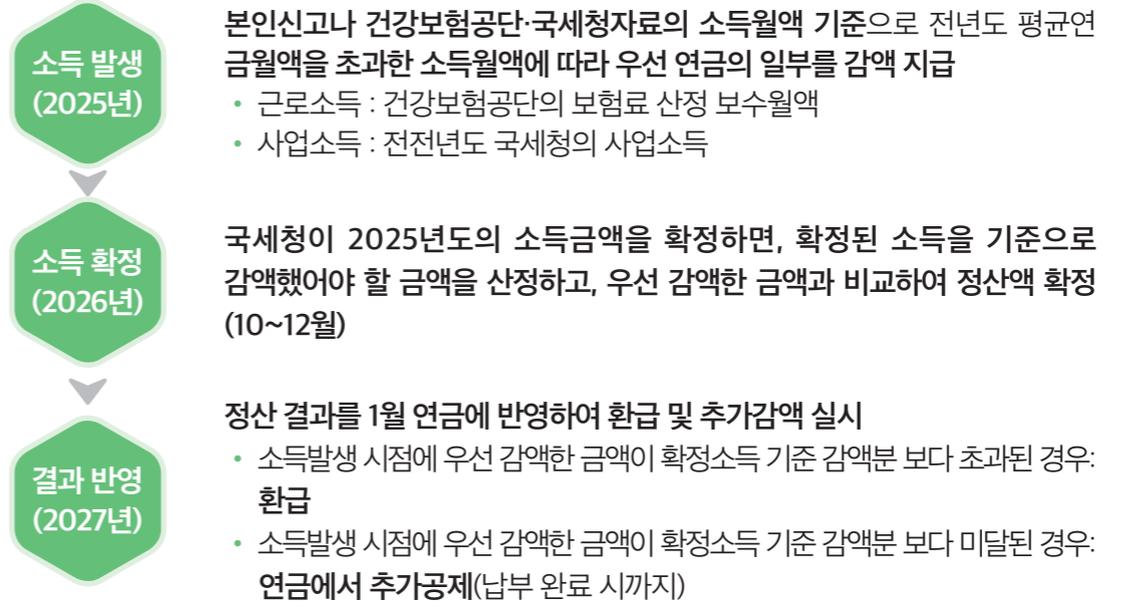
- 정지대상 기간: 1.1. ~ 12.31.  
- 당해연도 전체 소득과 전체 종사월수를 기준으로 산정  
  ※ 기관별 정지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B기관 소득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것이 아님
- 정지대상 총급여: 7,440만원

## 일부정지 세부 산정표

구분	산정금액	산정방법
총 급여	74,400,000원	A기관: 월200만원 × 12개월 = 2,400만원 B기관: 월720만원 × 7개월 = 5,040만원 → 2,400만원 + 5,040만원 = 7,440만원
소득금액	60,930,000원	총 급여 7,440만원 - 근로소득공제 1,347만원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금액
소득월액	5,077,500원	소득금액 6,093만원 ÷ 종사월수 12개월 → 1년분의 소득금액을 종사월수로 나눔
초과소득월액	2,337,500원	소득월액 5,077,500원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740,000원
산정액(월)	1,136,250원	90만원 + {(2,337,500원 - 2,000,000원) × 0.7}
일부정지 적용액(월)	1,000,000원	산정액(월)이 연금월액(200만원)의 1/2을 초과하여 연금월액의 1/2까지 감액

## 정지절차 (2025년 일부정지 기준)

- 소득이 발생한 2025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정지하고
- 2026년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정하면, 2027년 1월에 최종 정산



### Q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은 무엇이며, 왜 발생하나요?

- A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이란 연금정지 절차 2단계 <소득정산>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해당연도의 최종정산금액과 우선정지금액의 차이를 말합니다. 최종정산금액이 더 클 경우 연금월액에서 추가 공제되고, 우선정지금액이 더 클 경우 환급됩니다.
- A 이월된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은 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월액의 50%가 자동 공제되며, 연금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월액의 20%가 자동 공제됩니다.

### Q “추가감액분(정산차액)”을 추가로 공제(납부)할 수 있나요?

- A 연금월액에서 공제 방법 → 「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조정)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연금월액의 전액범위 내에서 추가공제됩니다.  
※ 신청서식: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조정)공제 신청서」
- A 일시 등 개별납부 방법 → 아래 계좌를 통하여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국민은행 360101-04-046484, 공무원연금공단  
※ 입금자: 본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소득정산 결과를 다다음연도(소득발생 2년 후) 1월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A 연금 감액은 당해연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소득이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다음연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을 제공받아 소득정산 후 반영하기 때문에 2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2025년도 총급여에 따른 월정지액 조건표

(단위: 원)

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제20조②,19조②)	월 정지액
44,880,000	11,982,000	32,898,000	240
45,000,000	12,000,000	33,000,000	3,000
50,000,000	12,250,000	37,750,000	121,740
55,000,000	12,500,000	42,500,000	270,660
60,000,000	12,750,000	47,250,000	448,750
65,000,000	13,000,000	52,000,000	655,990
70,000,000	13,250,000	56,750,000	893,490
75,000,000	13,500,000	61,500,000	1,169,500
80,000,000	13,750,000	66,250,000	1,446,580
85,000,000	14,000,000	71,000,000	1,723,660
90,000,000	14,250,000	75,750,000	2,000,750
95,000,000	14,500,000	80,500,000	2,277,830
100,000,000	14,750,000	85,250,000	2,554,910
110,000,000	14,950,000	95,050,000	3,126,58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3,698,250

※ 연금지급 정지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퇴직연금의 50%까지 정지 (법 제50조제3항)  
(예시 : 연금월액이 200만원이고 총급여가 9천만원인 경우, 정지액은 2,000,750원이 아닌, 연금월액의 50%인 100만원임)

연금정지 대상소득, 정지액 산정 및 운영절차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정지 대상소득, 정지액 산정 및 운영절차 동영상]

## 연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 공적연금 과세제도는 현직에서 기여금을 낼 때 소득공제를 받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공무원연금 과세대상 연금은 퇴직연금, 분할연금이며 총 기여금 납부월수에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 납부월수에 해당하는 연금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text{과세대상 연금소득} = \text{총 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과세기간)}}{\text{총 기여금 납부월수}}$$

- 참고로,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 연금과세 흐름

1단계 매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2단계 당해연도 12월 말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연금과세는 인적공제만 가능)  
(연도 중 이혼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배우자 제외하여 신고)  
신고서식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3단계 연말정산 인적(기본, 추가)공제 후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 산출

4단계 다음연도 1월 연금 지급시 차감원천징수세액을 정산(공제 또는 환급)

##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소득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과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 4)

## 인적공제(2025년 기준)

공제구분		요건(2025년 기준)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공제	소득자 본인	150만원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과세연도 연말정산 신고(12.31. 기준)시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공제 제외	150만원
	부양가족 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150만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로 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장애인 증명서 제출)	200만원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하여야 함.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동시 적용될 경우 한부모 공제만 가능	100만원
세액공제	자녀세액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 • 1명 : 25만원 • 2명 : 55만원 • 3명 이상 :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1명:25만원 2명:55만원 3명:95만원
	출산·입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당해연도에 출산·입양자자녀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셋째:70만원
	표준세액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7만원

## Q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하나요?

- A**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에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Q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나요?

- A** 과세대상 연금액(연 350만원 초과)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 Q 연금수급자도 자녀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 A**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고, 만 60세 이상(연금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기본공제대상 기준 및 공제대상 여부 확인  
공단 홈페이지 ( www.geps.or.kr )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 Q 연금정산 등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A**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 유족연금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종류

#### 퇴직유족연금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애연금액 × 60/100**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지급)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 (36개월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 1/36**

####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연계퇴직연금액 × 60/100**  
(유족이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수급자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1/2지급)

유족연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기준 및 지급금액 동영상]

### 유족의 범위와 기준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가 사망 당시에 부양하던 가족을 말하며,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배우자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 ※ 1995.12.31. 이전 퇴직한 연금수급자는 1995.12.31.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닐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에 따라 인정
자녀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손자녀	부(손자녀의 부)가 없거나 또는 그 부의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 만 19세 미만인 자 • 만 19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 ※ 단,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당시 부양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부모	친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부모
조부모	친조부모 또는 공무원 퇴직 전에 입양된 양조부모 ※ 단, 실제 부양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인정

유족 범위의 범위 및 순위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동영상]

## 사망 당시 퇴직연금수급자(공무원)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

구분	기준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 인정</li> <li>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li> </ul>
19세 미만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 인정</li> <li>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li> </ul>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 인정</li> <li>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li> <li>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2)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li> </ul> </li> </ul>
19세 이상 장애자녀 · 손자녀 · 조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 인정</li> <li>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나. 취학, 요양, 주거의 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li> </ul>

※ 19세 이상 장애자녀의 부양사실 인정기준 적용시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그리고 동순위유족의 사망 시점임

## 유족의 순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 순위와 같습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최근친(자녀, 부모)이 손자녀, 조부모보다 **선순위**입니다.
- 배우자는 **우선순위 유족과 동순위**입니다.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분하여 지급하거나,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 수령을 위임시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됩니다.

※ 2인 이상의 유족이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 동순위 유족의 사망시 사망한 자의 지분은 다른 동순위 유족에게 이전됨

## 퇴직유족연금 청구시효 및 신청방법

- 청구시효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여 **선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5년**

※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권리를 상실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의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한 날로부터 5년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 www.geps.or.kr )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퇴직유족연금 승계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li> <li>•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li> </ul>
	유족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li> <li>• 19세 미만 자녀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li> <li>• 조부모 : 부의 가족관계증명서</li> <li>• 손자녀 : 자의 가족관계증명서</li> <li>• 양부모·양자 : 입양관계증명서</li> </ul>
	유족대표자 선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만 제출</li> <li>• 위임자 자필 서명 및 신분증 사본 첨부</li> </ul>
	19세 이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li> </ul>

※ 19세 이상 장애자녀,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유족급여 청구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동영상\]](#)

##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상실

퇴직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장해상태에 있지 않은 (손)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한 때, 장해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만 19세 이상 (손)자녀의 장해상태가 해소되었을 경우 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상실된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즉시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및 연금종결에 따른 미지급연금 청구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li> <li>•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li> </ul>

###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후 동순위가 있을 경우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권리가 이전됩니다.

-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신청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li> <li>• 동순위자의 수급권 소멸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li> <li>• 1년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실종(가출)신고서</li> </ul>

유족연금 청구, 이전 및 상실 안내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이전 및 상실 동영상]

## 유족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수급자가 연금개시 3년 이후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연금지급이 종결됩니다. 다만, 연금개시 3년 이내에 사망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 직계 존·비속 (19세 이상의 자녀, 조부모 등)에게 3년 기준 미지급 연금액이 지급됩니다.

### 지급액 산정

$$\text{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액의 3년분} \times (36\text{개월} - \text{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 월수}) \times 1/36$$

### 상속순위에 따른 등분지급

이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 존·비속에 민법상의 상속 순위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등분 지급됩니다.

※ 동순위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

### 청구시효 및 청구방법

- 청구시효 : 사망한 날로부터 5년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서 및 연금종결에 따른 미지급연금 청구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li> <li>•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li> <li>• 유족대표자 선정서 ※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li> </ul>

###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의 연금 처리

유족이 아닌 직계 존·비속도 없는 때에는 재직 당시의 연금취급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의 분묘, 제기, 기념비, 기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과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A**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을 받던 중 가족의 퇴직유족연금을 승계받아 함께 수급하는 경우(대표자에게 연금을 위임한 자도 포함)에는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 중 1/2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액은 감액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포함  
 유족연금액(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의 60%)의 1/2만 지급

**Q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도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퇴직 후 재혼한 배우자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혼한 배우자가 재직 중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인데, 재혼을 할 경우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혼을 할 경우에는 사망한 퇴직연금수급자와의 가족관계가 종결되기 때문에 재혼 다음 달부터 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 상실됩니다.

**Q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가 있는 공무원 사망시 사망공무원의 퇴직유족 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 모두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되지만, 직계 비속인 자녀가 직계존속인 부모보다 선순위이고, 배우자는 선순위와 동순위가 되어 19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퇴직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선순위가 모두 수급권이 상실되고, 차순위가 있다면 차순위에 유족연금수급권이 이전됩니다.

## 배우자와 이혼시 연금이 분할 지급됩니다

### 분할연금 수급요건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와 2016년(제도도입) 이후 이혼하였을 것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이혼한 배우자의 연령이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였을 경우

※ 연도별 분할연금 개시연령

연도	연령	연도	연령
2016~2021년	60세	2027~2029년	63세
2022~2023년	61세	2030~2032년	64세
2024~2026년	62세	2033년	65세

### 분할연금액 산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액 중 공무원 재직기간 내의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text{분할연금액} = \text{퇴직연금액} \times (\text{혼인기간} / \text{공무원 재직기간}) \times 1/2$$

다만, 재산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로 분할연금을 산정하되,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공무원연금법 개정(2018. 9.21.시행) 이후 이혼하는 경우 가출,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며, 법원판결 또는 합의에 의하여 연금 분할을 결정하는 경우 분할 비율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함.(※ 2018. 9.20. 이전 별거기간은 제외되지 않음)

**예시** 공무원 재직기간 30년, 재직 중 혼인기간 20년, 퇴직연금액 300만원  
 → 분할연금액 = 300만원 × (20년/30년) × 1/2 = 100만원

분할연금제도 안내는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제도 안내 동영상]

## 분할연금 종결시 퇴직연금액 조정

-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분할연금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분할되기 전의 퇴직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
- 분할연금수급권이 이혼한 부부 쌍방에게 발생된 경우(부부공무원)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과세

분할연금도 과세 대상이며, 과세대상 금액은 [분할연금액 × 혼인기간 중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 월수 / 재직시 혼인기간(총 기여금 납부 월수)]입니다.

## 분할연금 청구시효 및 청구방법

- 청구시효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

※ 이혼 즉시 분할연금 신청구가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분할연금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분할연금·일시금 지급(선)청구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및 이혼 이력 표시 ) 사실혼인 경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판결문 사본</li> <li>• 별도의 재산분할 사항이 있는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분할지급 조정신청서(공단서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li> <li>•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실종자 기본증명서 또는 실종신고 심판서 및 확정증명서, 판결문 또는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표시)</li> </ul>

**Q**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2022년 2월 이혼하고 이혼 배우자가 1964년생인 경우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A** 분할연금은 연도별 개시연령에 따라 2026년(이혼배우자 연령 62세)에 지급되며, 분할연금 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신청구가 가능합니다.

**Q** 퇴직연금 300만원을 분할하여 퇴직연금수급자는 200만원을, 분할연금수급자는 (이혼한 배우자)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수급자에게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Q** 분할연금 수급 중인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 시 분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A** 분할연금 개시 후 재결합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종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연금은 계속 수령하고 퇴직연금수급자 사망 시 유족연금 승계도 가능합니다.

## 10 해외이민 및 국적상실시 연금 수령방법

#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도 연금은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일시청산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4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외이민의 경우에는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달 기준 금액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연금청산청구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민의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거주여권 및 그 밖에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li> <li>• [국적상실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류</li> <li>•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2002. 1. 1. 이후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li> </ul>

## 해외거주자 신상 확인

해외거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매년 6월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해외 체류(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망, 결혼, 이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우편, 모바일, 인터넷, 팩스, 방문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해외거주연금수급자 신상 신고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등 공인된 신분증 중 택1) 사본</li> <li>• [국내거주시] 3개월 내 발급된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해외거주시] 3개월 내 발급된 다음의 서류 중 택 1부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거주사실증명용만 가능), 거주증명서(시민권자), 세금신고서 사본, 병원진료기록, 예방접종확인서</li> </ul>
모바일 인터넷 신고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체인증 연금복지멤버십 모바일 앱으로 신상신고 인증시, 신상신고서 미제출</li> <li>2. 공공마이데이터로 여권(신분증)의 서류 1개 이상 제공 동의시(공단 홈페이지), 신상신고서 미제출 - 제공 서류 : 여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li> </ol>

해외 이주시 연금수령 및 신상변동 신고 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시 연금수령 및 신상변동 신고 방법 동영상]

## 공무원연금고객센터 및 공단 지부에서 연금증서 및 각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증서

연금수급자에게는 최초 퇴직급여 지급시 연금증서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자택에 보내드립니다.

###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연금수급자의 연금소득 증명에 적합한 서식으로 금융기관 대출, 공직자 재산등록, 자녀유학, 해외여행(비자발급) 등 정기적인 연금소득 확인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전화	공단으로 전화하여 신분 확인 후 발급 신청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인터넷	공단     공단 홈페이지 ( www.geps.or.kr )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민원서류발급 ▶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신청」에서 발급
	정부 24     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검색 ▶ 발급하기
 챗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단 홈페이지 ▶ 챗봇 채팅상담 ▶ 민원서류발급 ▶ 연금생활자 민원서류발급 ▶ 발급받을 민원서류 선택 ▶ 본인인증 후 발급</li> <li>정부24 홈페이지 ( www.gov.kr )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검색 ▶ 발급하기</li> </ul>
 우편 팩스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제증명 발급 신청서」</li> <li>구비서류 : 신분증(사본)</li> </ul>

※ 발급가능 증명서: 연금수급증,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퇴직(유족)연금증서 재발급, 연금지급 사실 확인서, 연금지급 내역서, 공무원대부(상환) 사실 확인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공무원연금내역서(예상퇴직금)

### 공무원연금증

공무원연금증을 소지하시면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제휴복지서비스 이용시 할인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연금증은 모바일 앱(연금복지멤버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 연금 민원서류 발급 방법은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쳤을 때 나오는 URL을 누르시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자 연금 민원서류 발급 방법 동영상]

## 모바일 연금복지멤버십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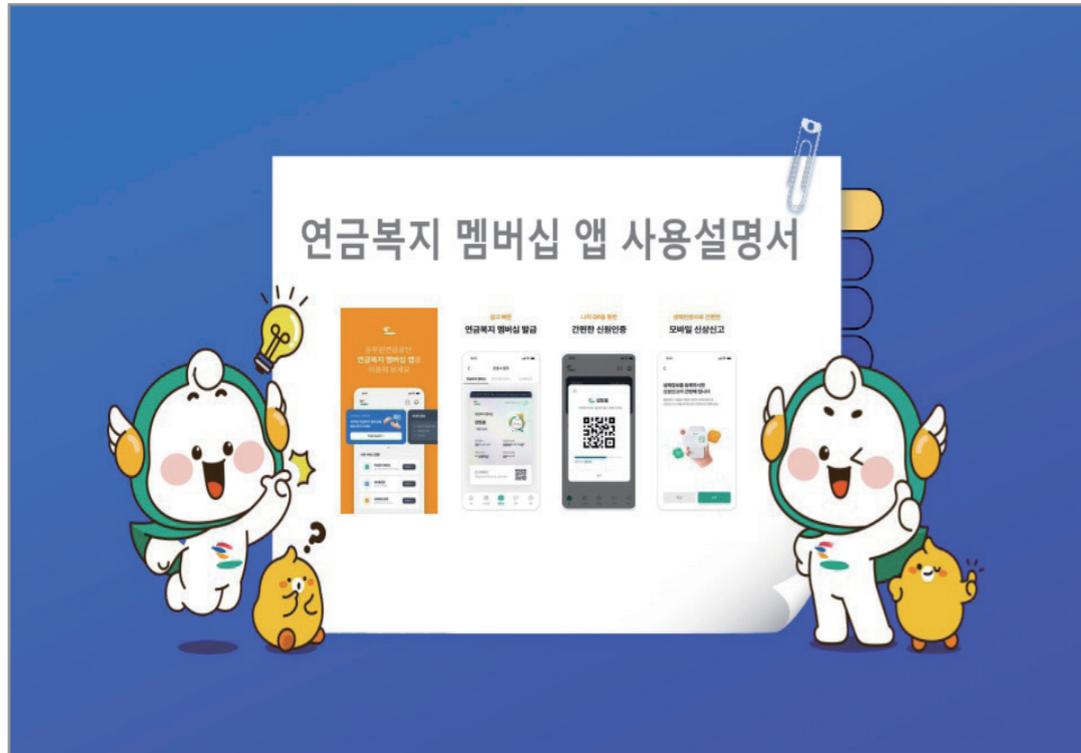
### 연금복지멤버십이란?



DID기반 모바일 신원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공무원 연금증이 연금복지멤버십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 ▶ 모바일에서 본인인증과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만으로 연금복지멤버십 발급
  -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간편 로그인 및 QR코드로 복지시설 이용, 교육 출석체크 등 각종 연금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 ▶ 생체정보 한 번만 등록하면! 서류제출 없이 간편한 신상신고!
  - ▶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증명(DID) 기술로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 유출 NO!
- 전·현직공무원 모두 본인인증 및 신분증 촬영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신원인증과 신상신고를 한 번에!

일상의 편리함, 지금 사용해 보세요!



## 목차

1 모바일 앱 설치 및 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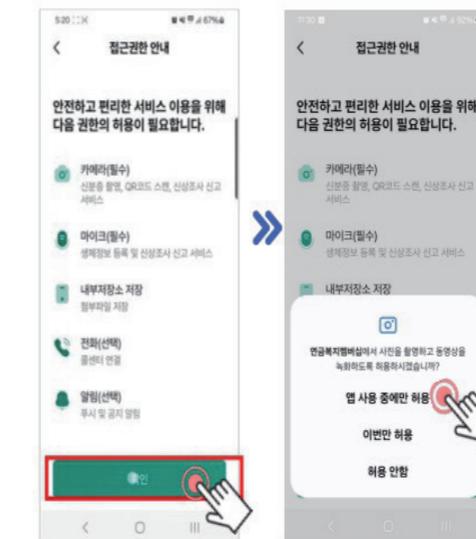
2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

3 생체정보 등록과 신상 신고하기

4 기타 (메뉴 둘러보기)

## 01 모바일 앱 설치 및 시작하기

### 1-2 접근 권한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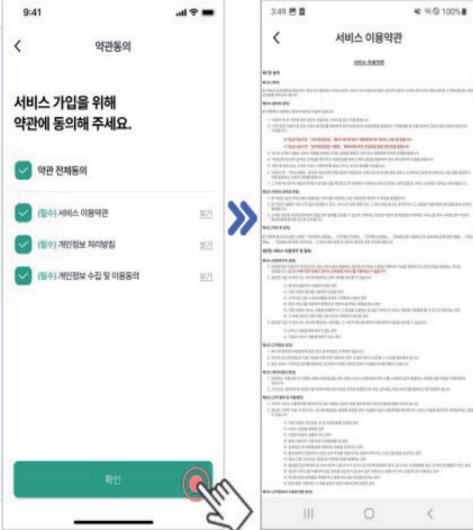
- 1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권한 안내 동의를 진행합니다.
- 2 [확인] 버튼 선택 시 화면의 접근 권한 동의의 처리 됩니다.

#### 앱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1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 및 그 이유 등을 이용자 에게 명확하게 알리고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필수 접근권한이 모두 동의하면 앱 이용이 가능합니다.

**01** 모바일 앱 설치 및 시작하기 2024 사용자매뉴얼

**1-3** 약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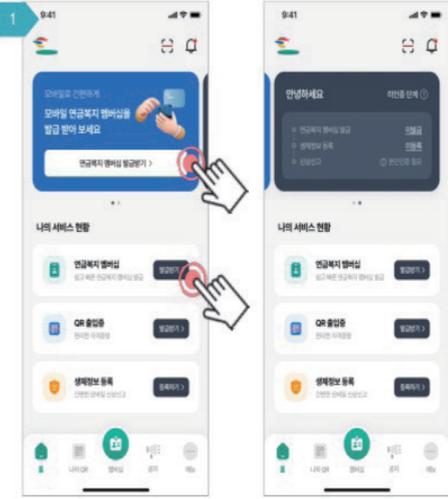


- 필수 약관 미 동의 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확인 버튼이 비활성화 됩니다.
- 필수 약관을 모두 동의 시 확인버튼이 활성화 되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5

**02**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 2024 사용자매뉴얼

**2-1** 초기화면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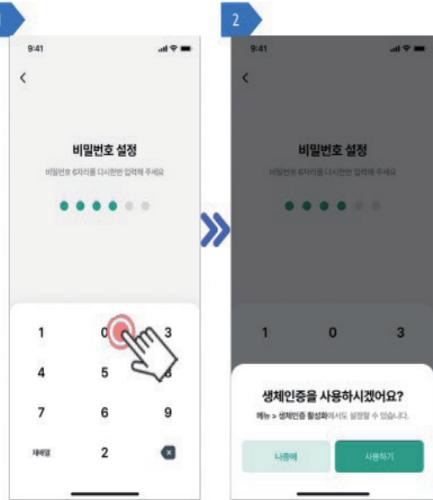
- 연금복지 멤버십 앱을 위한 멤버십 인증서 발급 및 신상신고를 위한 메인 화면입니다.
 

본인인증 증명서, 연금복지 멤버십 미발급자는 상단 안내 화면의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 >]** 또는 나의 서비스현황의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 받기 >]**를 선택 합니다.

7

**01** 모바일 앱 설치 및 시작하기 2024 사용자매뉴얼

**1-4** 앱 비밀번호 설정 (폰 자체 생체인증 사용 선택 가능)



- 연금복지 멤버십 앱 에서 사용할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합니다. 인증 설정을 위해 비밀번호 입력 후 생체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용하기]** 버튼 선택 시 기기 내 등록된 생체인증 인식 후 설정완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나중에 하기]** 버튼 선택 시 설정완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생체인증은 선택 사항이며, [메뉴]를 통하여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사용자의 생체정보 설정 (선택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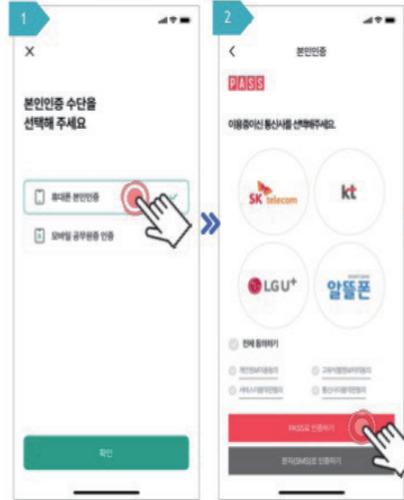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설정 > 잠금화면 > 화면 잠금 방식 > PIN/패턴/비밀번호확인 > 생체인식 > 지문

**아이폰 사용자**  
**[Face ID] , [Touch ID]**  
설정 > Face ID 및 암호 > 암호 입력 > Face ID 혹은 Touch ID 사용

6

**02**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 2024 사용자매뉴얼

**2-2** 본인인증수단 선택 및 휴대폰 본인인증



- 본인인증 수단 선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다음]** 선택 시 휴대폰 본인인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공무원증 인증]>[다음]** 선택 시 모바일 공무원증 앱이 실행됩니다. ※ **[모바일 공무원증 인증]**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사용자에 한해 이용 가능
- PASS/SMS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발급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화면이 노출됩니다. **[취소]** 선택 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진행하기]** 선택 시, 신분증 촬영화면으로 이동합니다.

8

**02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 2024 사용자매뉴얼

**2-3 신분증 촬영**



- 1 본인의 실물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준비해주세요. **[신분증 촬영]** 버튼 선택 후 가이드 영역에 맞춰 신분증 촬영을 진행해주세요.
- 2 신분증 촬영 후, 다음 화면에 신분증 사진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표시된 사진이 잘못 인식된 경우 재촬영을 진행해주세요.  
+ 신분증 사진은 **[메뉴]**의 멤버십 사진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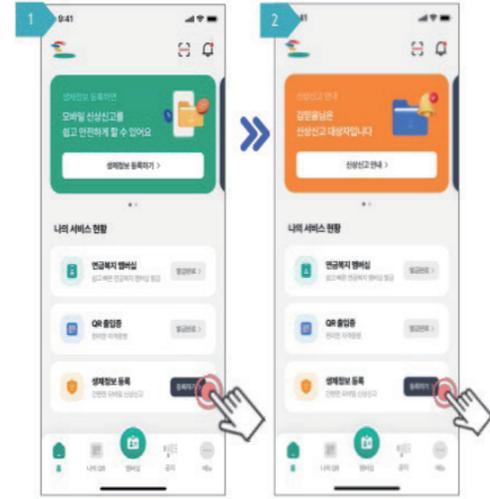
**신분증 촬영 TIP**

- 1 꼭 본인의 신분증 원본(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촬영해주세요.
- 2 신분증 원본 앞면을 가이드 영역에 가득 차게 촬영해주세요.
- 3 촬영 시 되도록 어두운 배경에서 촬영해주세요.
- 4 촬영 시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9

**03 생체정보 등록과 신상 신고하기** 2024 사용자매뉴얼

**3-1 본인인증 증명서, 연금복지 멤버십이 발급 완료된 사용자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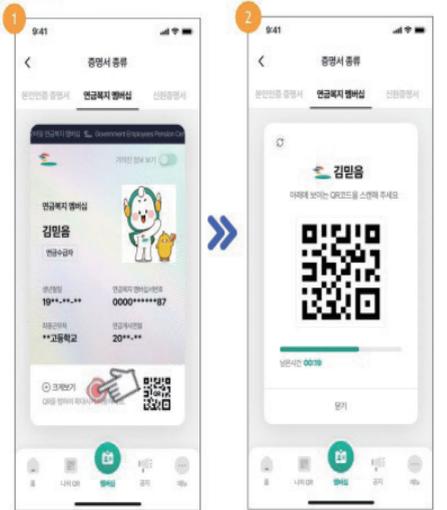


- 1 본인인증 증명서, 연금복지 멤버십 2개의 증명서를 발급 받은 수급자에 해당하는 초기화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원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 **생체정보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 2 이 단계에서 신상조사 진행을 위해 **신상신고** 버튼을 선택합니다.

11

**02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하기** 2024 사용자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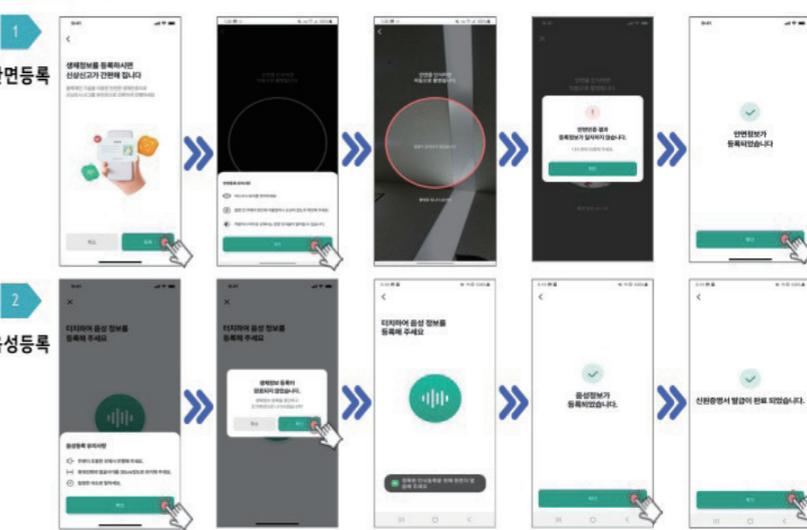
**2-4 증명서 확인**



- 1 발급을 완료하면 하단의 멤버십 탭에서 **[연금복지 멤버십]**, **[본인인증 증명서]**, **[신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증명서는 본인인증을 완료한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이며, 연금복지 멤버십 발급 시 함께 발급됩니다.
- 2 증명서 카드의 하단 QR코드 영역을 선택하면 **QR코드**가 크게 표시됩니다.

10

**3-2 안면(얼굴) 정보와 음성(목소리) 정보를 등록**



- 안면등록**
  - 1 안면정보 등록 순서에 따라 안면(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 음성등록**
  - 2 음성정보 등록 순서에 따라 음성(목소리)을 등록합니다.  
-내 목소리로 인증- 문구를 5회 반복 마이크에 입력

12

03 생체정보 등록과 신상 신고하기 2024 사용자매뉴얼

3-3 안면(얼굴) 정보와 음성(목소리) 정보를 기존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검증

**1 안면검증**

**2 음성검증**

**1 안면정보 검증**  
순서에 따라 안면(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음성정보 검증**  
순서에 따라 음성(목소리)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내 목소리로 인증' 문구를 반복해서 마이크에 입력

13

04 기타 (메뉴 둘러보기) 2024 사용자매뉴얼

4-1 메뉴 설정화면

[메뉴설정 화면]

[인증이력 조회]

[신상조사 이력 조회]

[앱 초기화]

14

## 가계자금 대출을 알선해 드립니다

가계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금을 받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가능금액 및 이율

최고 3천만원(매달 상환금액이 월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가능하며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및 이율은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므로 연금수령 은행과 상담(대출금액 및 이율)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 취급은행

NH농협중앙회(단위농협 제외),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 대출은행

취급은행 중 현재 연금을 받는 은행에 연금수급자 신용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은행으로 연금 수령계좌 변경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

최대 5년

### 신청절차

연금지급 사실 확인서 발급 후 본인이 협약금융기관(연금수령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 구비서류 : 연금지급 사실 확인서 또는 연금증서, 신분증, 연금수령 통장(사전에 대출 받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대출한도 내에서 일정금액 통장 자동대출(마이너스) 가능]

### 기타사항

연금수급자는 무보증 신용대출이 원칙이지만,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등의 이유로 만 65세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행복한 연금생활의 동반자 월간 <공무원연금>을 소개합니다

월간<공무원연금>과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연금지는 40년의 역사와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은퇴생활 종합 잡지입니다.

구독료 월 1,000원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건강, 여행, 문화, 취미생활 정보와 연금수급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다양한 연금제도를 시기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믿음직한 친구를 만나 보세요.

내 작품이 책에 실리는 기쁨과 독자 참여 코너에 응모하여 당첨이 되면 작은 경품을 받는 소소한 행복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구독신청 방법

구독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방법1** 카카오톡을 열고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을 클릭 → '월간공무원연금'을 검색 → 친구추가 후 '구독신청' 선택

**방법2**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에 접속해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후 [복지서비스] → [월간공무원연금] → [독자참여 안내]에서 정기구독 신청

**방법3**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로 전화하여 구독 신청



## 내 손 안에 공단소식, 공단의 SNS채널을 소개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연금제도 및 공단의 소식을 받아보세요!



### 유튜브

연금정보, 복지정보? 글은 잘 읽히지도 않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단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쉽고 간단하게 전달드립니다!



### 블로그

공단의 블로그에 놀러오세요!  
재직공무원을 위한 복지 혜택부터 연금수급자를 위한  
연금정보, 공단 소식까지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 인스타그램

공단 마스코트 믿음이와 동행이의 귀여운 일상 콘텐츠와  
공단 직원의 일하는 모습을 담은 콘텐츠까지!  
재밌는 콘텐츠가 가득!



### 카카오톡 채널

다들 핸드폰에 카카오톡 하나쯤은 있잖아요?  
공무원연금공단을 검색해서 쉽고 빠르게 소식을 접해보세요



### 웹진

앉아만 있어도 유용한 정보들이 굴러 들어온다?  
이메일 서비스, 웹진!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메일 수신에 동의해주세요





# 03

## 연금생활 지원 및 참여

소중한 순간, 새로운 시간들,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걸어오신 길에 감사와,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되겠습니다.

- ① 공직윤리 의무
- ②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 ③ 사회기여활동 지원
- ④ 퇴직공무원 인력뱅크포털 G-시니어
- ⑤ 후생복지시설
- ⑥ 제휴복지서비스

### ① 공직윤리 의무

## 퇴직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공직윤리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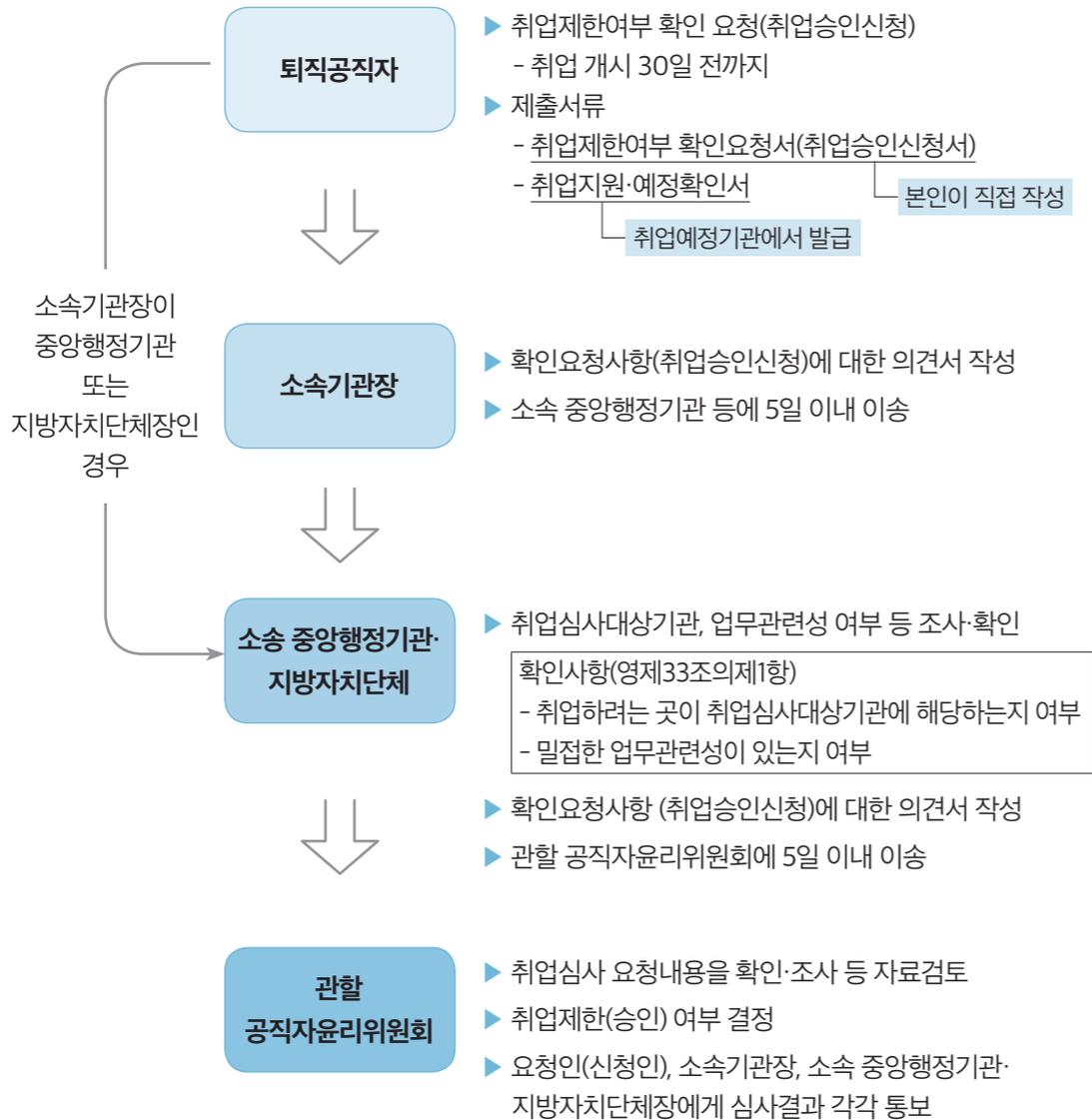
###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 제한제도

구분	의무사항	기한(기간)	주요내용
취업	취업심사	취업 개시 30일 전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 시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제출 (→퇴직 전 소속기관)
	업무취급 제한	영구 ※ 기관업무기준 업무취급제한은 퇴직 후 2년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일정 업무' 취급 제한 (모든 공직자) + 퇴직 전 2년 동안 근무한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처리한 '일정 업무'의 취급 제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업무내역서 제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퇴직 후 1년 경과 후) → 1개월 이내 (퇴직 후 2년 경과 후) → 1개월 이내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 제출 (→소속기관장)
	취업사실 신고 및 취업이력 공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신고) 취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고)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 취업시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퇴직 전 소속기관) (공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취업이력을 조사하여 인터넷에 공시
재산	퇴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1월 1일 이후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재산변동사항 신고 ※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접속해 신고

#### 취업의 범위

사외이사·비상근 고문 등 직책명과 관계없이 사기업체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 등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해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 관련 일회성 연구용역, 자문, 위촉직 위원 등을 일정 기간 수행하고 대가(기타소득 등)를 수령한 경우에도 '취업'에 해당

## 취업심사 절차(퇴직 후 3년 이내)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일은 각 관할 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되며 매년 1월초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당해 연도 월별 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②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 퇴직 시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무심사 준비비용으로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 시 재직자 단체보험은 가입이 종료되고, 과거 또는 현재의 병력 때문에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은퇴공무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공단은 2020년도 부터 무심사 및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한 퇴직자 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입대상

정년 또는 명예·일반 퇴직한 공무원연금수급자

### 신청기간

퇴직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이내(퇴직급여 청구 후 신청 가능)

### 보장기간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1년)
- 신청(보험금 납부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12월 31일까지 보장(1년 단위 재계약)

### 보장내용 및 개인보험 비교

(단위 : 원)

구 분	보장범위	남자(평균연령 62세)		여자(평균연령 60세)	
		개인보험	단체보험	개인보험	단체보험
생명/상해	3천만원	775,800	290,300	502,800	174,800
의료비보장	급여+비급여+특약 각 1천만원 (통원 각 10만원)	633,000	507,730	738,900	524,740
입원일당 의료비	일 2만원	159,800	157,600	216,100	150,700
암진단비	5백만원	155,400	77,900	81,700	82,100
2대질병 진단비	각 5백만원	98,100	53,800	49,500	189,800
연간보험료		1,822,100	1,087,330	1,589,000	951,240
개인보험 대비 보험료 절감액		734,770		637,760	

※ 보험 보장기간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해지시 월할 정산환불

## 가입월별 납부 보험료

(2025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1,087,330	994,980	911,560	819,220	729,850	637,500	548,130	455,780	363,430	274,060	181,710	92,340
여	951,240	870,440	797,470	716,680	638,500	557,710	479,520	398,730	317,940	239,760	158,970	80,790

## 납부방법

보험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연간보험료 일시 납부(해지 후 재가입 불가)

## 가입신청 및 상담문의

- 가입신청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맞춤형복지포털 → 단체보험 → 퇴직자단체보험
- 상담문의 : 공무원연금고객센터 ☎1588-4321



## 3 사회기여활동 지원

# 퇴직 후에 공직경험과 재능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황

설치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공무원 전문역량 활용 등을 통한 사회적 기여 확대</li> <li>• 퇴직(예정)자 교육 강화 및 전담지원체제 마련 등 지원 인프라 구축</li> </ul>
설립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7월(5개소 :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강원)</li> <li>• 2013년 1월(3개소 : 대구, 전북, 제주)</li> <li>• 2017년 2월(1개소 : 경기·인천)</li> <li>• 2018년 7월(1개소 : 세종)</li> <li>• 2023년 2월 (세종·대전지부 통합)</li> <li>• 2024년 1월 (경인·강원지부, 광주·전북지부 통합)</li> </ul>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연금공단 7개 지부</li> </ul>

## 서비스 내용

### 상담

- 퇴직 후 사회기여활동 참여를 위한 경력·희망분야 상담

### 교육

- 연금아카데미 : 사회공헌(봉사자 양성과정 등)

### 사회기여활동 지원

- 공직경험을 살린 재능나눔 중심의 사회기여활동 지원
-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상록자원봉사단 활동 연계

## 이용안내

- 방문·전화 : 지부별 사회기여활동 담당자
- 온라인 : 공단 홈페이지 (www.geps.or.kr) → 퇴직공무원 인력뱅크포털 G-시니어
- 운영시간 : 월~금 / 09:00~18:00
- ※ 공단 지부 주소 및 연락처는 66p 참조

## 1. 상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전문상담사가 개인별 경력, 희망분야의 사회기여 활동에 대하여 전문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

- 방문상담**  
지부에 방문하여 전문상담사가 1:1 맞춤형 전문상담
- 유선상담**  
※ 지부 연락처 :  
(서울) 02-560-2951, (경인·강원) 경인 02-560-2958, 강원 2453  
(부산) 051-630-6861, (세종·대전) 044-410-1334,  
(광주·전북) 062-350-5028, (대구) 053-715-5432,  
(제주) 064-720-1604

## 2. 교육

퇴직(예정) 공무원이 퇴직 후에 사회기여활동 등 보람된 은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시기
봉사자 양성과정	봉사활동 기본소양, 봉사리더양성 프로그램, 재능나눔 등 봉사활동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초/중/고급)	수시

## 3. 사회기여활동 지원

공무원연금공단은 167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퇴직공무원이 보다 다양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기여활동

공직에서 쌓은 지식과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퇴직 후에도 사회취약계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재능나눔' 활동입니다.

## 활동분야

구분	활동내용
교육	다문화가정 자녀학습지도, 소년원학교 교사, 자립준비청소년 멘토링 등
안전	배움터 안전지킴이, 보행안전지킴이, 심폐소생술, 재난안전활동 등
행정	사회적 기업 행정지원, 세무·법률·회계 지원 등
문화	풍선아트, 동화구연, 마술, 악기연주, 사진촬영, 관광안내 등
생활	활동보호, 급식지원, 식사·반찬지원, 주거개선, 마을공동체활동 간호·간병, 환경정화, 인권개선
해외	글로벌 행사지원 및 통·번역, 해외봉사 등
기부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국장학재단, 월드비전 등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67여개 유관기관 MOU 체결을 통한 참여분야 확대

## 참여 절차



## 4. 사회기여활동 지원

### 운영

상록자원봉사단은 퇴직공무원의 자생·자발·자율적 봉사단체로 7개 지부에서 270여개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등 일반 노력 봉사부터 지식과 재능을 활용한 전문봉사영역까지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가입 및 참여조건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있는 퇴직공무원이면 누구나 회원가입 및 참여 가능

**Mission** 퇴직공무원의 공직 경험과 재능을 이웃과 공동체에 나눔으로써 은퇴 후 삶의 보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Vision** 우리는 공직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고 실천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평생봉사단

# 은퇴공무원 행복나눔 온라인공동모금사이트개설



##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부하세요!

은퇴공무원 행복나눔 기부는 2013년에 시작되어 2024년까지 총 6억 7천만원을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한국장학재단, 월드비전 등을 통해 소아암환자, 자립준비청소년 장학금, 해외아동지원 등에 기부했습니다.

2025년에는 사랑의 열매와 협력하여 은퇴공무원 공동모금 사이트를 신규 개설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에 동참해주시는 선배님들의 소중한 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기부참여방법

핸드폰 카메라 열기 → 좌측 링크 클릭 → 정기·일시기부 중 선택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퇴직공무원 인력뱅크포털에서도 이용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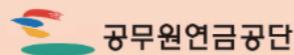
↑ ↑ ↑  
기부참여 바로가기

### 기부금 활용처

온라인 모금사이트를 통해 후원된 금액은 공단 주관 기부협의회를 거쳐 은퇴공무원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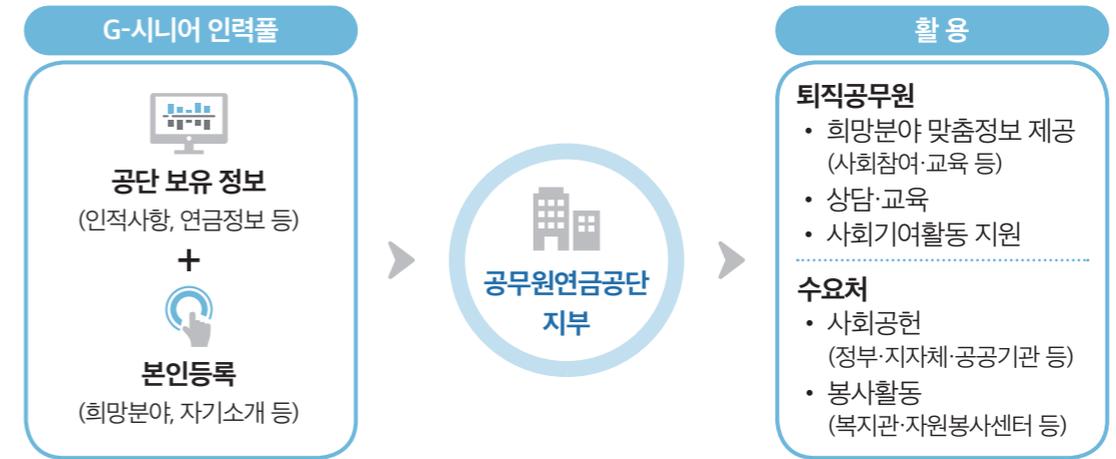
### ['13~'24년 기부금 모금 및 지원현황]

기부단체	모금액	지원내용	지원액
사랑의열매 <small>사회복지공동모금회</small>	459,173 천원	취약계층 자녀 학습비, 소아암 환자 치료비 등	446,173 천원
초록우산 <small>어린이재단</small>	163,424 천원	저소득층 아동 학습·주거·보육비 등	163,424 천원
한국장학재단	43,710 천원	취약계층 대학생 생활비·등록금 지원	43,710 천원
World Vision	1,550 천원	해외 취약계층 아동 및 마을 지원	1,550 천원
합계	667,857 천원		



## 퇴직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퇴직공무원 인력뱅크포털 G-시니어가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온라인 종합포털시스템으로 사회공헌, 일자리 정보, 회원간 커뮤니티 참여공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보제공

- 사회공헌 : 1365 나눔포털, 지자체, NGO 등 정보제공
- 커뮤니티 : 봉사활동 후기, 자유게시판, 봉사단커뮤니티 등 참여공간

### 이용방법



##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후생시설로서 호텔, 골프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시설이지만,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은 시설에 따라 30~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후생복지시설 할인적용 대상

- 재직공무원, 연금수급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 증빙 : 공무원증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배우자는 부부동반으로 방문 시에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천안상록리조트

천안상록리조트는 중부권 최대의 종합휴양시설로서 27홀 대중형골프장, 가족호텔, 유스호텔, 아쿠아피아 및 놀이공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약 1시간 거리, 세종시정부 종합청사와는 불과 20분 거리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천안상록골프장은 최고의 코스품질과 잔디 상태를 유지하여 아시아 100대 골프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명품 골프장입니다.



<b>위 치</b>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b>주요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프장 : 대중형 27홀, 골프연습장(23석),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li> <li>• 호텔 : 가족호텔(116실), 유스호텔(106실), 식당, 사우나, 대강당</li> <li>• 컨벤션 : 그랜드홀(400석), 상록홀(300석), 수신홀(100석) 등 13실 1,220석</li> <li>• 놀이공원 : 야외놀이시설(바이킹 등 11종), 아쿠아피아(실내·외 물놀이시설), 눈썰매장</li> <li>• 체련시설 : 다목적잔디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li> </ul>
<b>문 의</b>	041-560-9114
<b>홈페이지</b>	www.sangnokresort.co.kr

### 화성상록골프장

화성상록골프장은 수도권에 위치한 대중형골프장으로서 수목, 바위 등 산악지형의 모습을 그대로 살려낸 친환경 골프장입니다. 모든 홀의 티잉그라운드에서 그린을 볼 수 있으며, 캐리오버홀·아일랜드홀 등에서는 도전과 스릴을 원앙홀에서는 호수·암석·벙커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시계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코스를 혼합 배치하여 여러 각도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골프장입니다.



<b>위 치</b>	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60번길 80 576
<b>주요시설</b>	대중형 27홀,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b>문 의</b>	031-371-0100
<b>홈페이지</b>	www.sangnokresort.co.kr

### 남원상록골프장

남원상록골프장은 지리산 아래봉에서 노고단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경관을 자랑합니다. 코스 주변의 깊고 수려한 소나무 숲에서 뿜어 나오는 피톤치드는 일상에 지친 플레이어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코스 내 계곡을 가로 지르는 캐리오버홀이 많은 몽룡코스는 도전적인 산악형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넓은 호수와 코스를 따라 흐르는 시냇물이 어우러진 춘향코스는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남원상록골프장은 골퍼라면 누구나 도전해보고 싶은 즐거운 골프장입니다.



<b>위 치</b>	전북 남원시 대산면 월계길 11
<b>주요시설</b>	대중형 18홀,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b>문 의</b>	063-630-1300
<b>홈페이지</b>	www.sangnokresort.co.kr

## 김해상록골프장

김해 상록골프장은 정규 18홀 대중형골프장으로서, KTX 진영역과 인접하고 남해고속도로, 국도 14호선 등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일반 대중형골프장에서는 볼 수 없는 격자무늬의 페어웨이 연출은 물론, 뛰어난 그린 관리를 통해 고급스런 회원제골프장의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산허리를 돌아가며 끊임없는 다양성을 제공하는 김해상록골프장은 플레이어들에게 최고의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 위 치**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74번길 198
- 주요시설** 대중형 18홀, 클럽하우스, 식당, 그늘집, 프로샵
- 문 의** 055-340-1400
- 홈페이지** www.sangnokresort.co.kr

## 수안보상록호텔

수안보상록호텔은 문경새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령산 북서쪽 충주시 수안보에 자리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임금님이 다녀갈 정도로 인체에 유익한 각종 무기질을 함유한 양질의 자연용출 온천수가 샘솟는 곳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두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한 수안보상록호텔에는 101실의 객실과 한/양식 레스토랑, 각종 세미나가 가능한 회의장 및 교육장, 온천사우나 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호텔 인근에는 월악산을 비롯하여 충주호, 송계계곡, 미륵사지 등 함께 둘러볼만한 자연명소가 많이 있으며, 충주시 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관광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옛 선비들이 과거시험을 보러가던 문경새재 과거길은 맨발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길이 평탄하고 넓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으며, 영화와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서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를 맞아 천혜의 자연 경치와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는 수안보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위 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22
- 주요시설** 객실(101실), 대중온천욕장, 그랜드홀(300석), 대연회실(120석), 중연회실(80석), 가야금홀(80석) 등
- 문 의** 043-880-3700
- 홈페이지** www.sangnokresort.co.kr

## 6 제휴복지서비스

# 제휴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의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공단에서는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퇴직연금일시금수령자 포함) 맞춤형복지포털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업체와 제휴하여 쇼핑몰, 건강검진, 여행, 숙박 등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제휴복지서비스는 맞춤형복지포털 회원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맞춤형복지포털” 또는 “공무원제휴복지서비스”를 검색 후 접속도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제휴카드

- 공단과 카드사가 제휴하여 공무원 및 연금수급자에게 쇼핑·주유·영화예매·통신요금·교통비 할인·적립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연금 마크”가 표기된 카드입니다.
- 제휴카드사: 삼성, 신한, 농협(BC), 국민, 롯데, 전북, 광주, BC(우리, 부산, 광주, 그린카드, 우체국)
- 신청방법 ① 제휴복지물(GEPS제휴모아) 접속  
② 카테고리에서 제휴카드 → 제휴카드사 선택  
③ 카드사 화면에서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발급

### • 특화 서비스

- 하나** 주유·쇼핑(대형마트)·음식점 등 소비유형별로 할인·적립 서비스 제공
- 둘** 제휴숙박시설·건강검진 및 공단 시설사업장 등 현장서비스를 이용 시 신분 확인용으로도 활용 가능

- 셋** 삼성, 롯데, NH농협, BC그린, 광주은행 카드로 190여개 유명 브랜드(신세계, 하이마트, 진에어 등)에서 사용하면 전월카드 사용실적과 관계없이 무제한 추가 할인(2~10%)혜택\* 제공

\* 할인 브랜드와 상세내역은 웰페어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EPS제휴모아)제휴카드)웰페어클럽 청구 할인)

## 주요 제휴업체

제휴복지물 (GEPS제휴모아)에서는 쇼핑몰, 건강검진, 여행 등 150여개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시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쇼핑몰	신세계적 쇼핑몰 <b>SSG.COM</b>	우체국 쇼핑	11D
건강검진	우리원 헬스케어 We Want! Healthcare	CMNICARE KMI 한국여의연구소 협력사	서울메디케어 건강검진센터
여행	롯데관광 LOTTE TOUR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투어	웹:투어
숙박	yanolja	KUMHO RESORT	SONO HOTELS & RESORTS
상조	PREED 프리드라이프		

## 제휴복지서비스 혜택정보 수신방법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통해 숙박권, 건강검진권 등 푸짐한 경품이 있는 다양한 이벤트 소식, 제휴 쇼핑몰의 특가상품 등 매주 찾아오는 제휴혜택 소식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 탭·돋보기 클릭

'제휴복지서비스' 검색·채널 클릭

채널 추가 클릭

## 공무원연금고객센터 및 지부 안내



### 공무원연금고객센터 ☎ 1588-4321

서울지부 (서울)	전화	02)560-2459,2553,2554	
	팩스	02)560-2840	이메일 seoul@geps.or.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우)06152	
경인·강원지부 (인천, 경기, 강원)	전화	02)560-2455,2587,2928,2255,2702	
	팩스	02)560-2600	이메일 kyeongin@geps.or.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역삼동) 서울상록회관 6층 공무원연금공단 경인·강원지부 (우)06152	
부산지부 (부산, 울산, 경남)	전화	051)630-6819,6845,6852	
	팩스	051)630-6878	이메일 busan@geps.or.kr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진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우)48745	
세종·대전지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화	044)410-1304,1341	
	팩스	044)410-1320	이메일 sejong@geps.or.kr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 (우)30103	
광주·전북지부 (광주, 전남, 전북)	전화	062)350-5061,5076	
	팩스	062)350-5090	이메일 gwangju@geps.or.kr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2층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우)61932	
대구지부 (대구, 경북)	전화	053)715-5434,5435	
	팩스	053)715-5404	이메일 daegu@geps.or.kr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대봉동)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 (우)41950	
제주지부 (제주)	전화	064)720-1606	
	팩스	064)720-1650	이메일 jeju@geps.or.kr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노형동) 현대대상 제주사옥 12층 공무원연금공단 제주지부 (우)63098	

발행처 공무원연금공단 | 발행일 2025년 3월

이 책의 전문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025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236개)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120다산콜재단

88관광개발(주)

가평군복지재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시설)

강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시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원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강진문화관광재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고양도시관리공사

과천시공사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광주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광역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환경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도시공사

구미도시공사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군포도시공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 주식회사

기장군도시관리공단(시설)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노원구시설관리공단(시설)

노원환경재단

단양관광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교통공사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개발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동작 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독도재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해문화관광재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밀양물산 주식회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시설)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성북구도시관리공단(시설)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원도시공사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시흥도시공사

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도시공사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도시공사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여주도시공사(시설)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시설)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시설)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소년재단

의정부도시공사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관광공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시설)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스마트시티(주)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단법인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김포시청소년재단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재단법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무안항토건축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산진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안군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여근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충북개발공사
재단법인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b>ㄱ</b> 코레일유통(주)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	<b>에</b> 태백시복지재단
재단법인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통영관광개발공사
재단법인 연제구상권활성화재단	<b>ㅍ</b> 파주도시관광공사
재단법인 울주문화재단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평택도시공사
재단법인 이천시청소년재단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	포천도시공사
재단법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포항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	<b>ㅎ</b> 하남도시공사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재단법인 평창유산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재단법인 해남문화관광재단	한국농어촌공사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재단법인 홍주문화관광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재단법인 화성시 환경재단	한국산업은행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재단법인 양평문화재단	한국석유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북개발공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한국조폐공사
제주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한국투자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중구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b>ㄷ</b>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창원레포츠타크	
창원시설공단	
천안도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